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협상안 Q&A

Q1) 지금껏 임금체계는 어떻게 달랐나요?

A1) 아래와 같은 상이한 임금체계로 인해 그동안 각종 수당 등이 다르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하 '임단협')이 마무리 되면 양사의 임금체계가 통합되어 동일한 임금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구분	舊 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신사규)
급여항목	**기본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기타급료**	**기본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고정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기본급 × 8%**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30 × 1.5**
휴일근로수당	**기본급/183h × 1.5**	**통상임금/209h × 1.5**
리플레쉬비 + 문화체육비	**연 150 ~ 246만원 지급**	-
임금피크제	-	**80% - 70% - 60% - 50% - 40%**

Q2) 임금체계가 통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기본급(70%) + 중식대(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 시간외 수당(월11시간 분) + 기타수당으로 변경됩니다.
구)대우증권 직원들은 연차수당, 평일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며
구)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은 리플레쉬비 + 문화체육비가 2019년부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산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구)대우증권	(기본급 × 8%)	(통상임금/209h × 8h × 1.5배)
구)미래에셋증권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급+고정시간외수당)/30 × 1.5배	(통상임금/209h × 8h × 1.5배)

(시간당 휴일 근로 수당 변화)

	변경 전	변경 후
구)대우증권	(기본급/183h × 1.5배)	(통상임금/209h × 1.5배)
구)미래에셋증권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임급/209h × 1.5배)	(통상임금/209h × 1.5배)

Q3) 월 11시간분의 고정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3) 현재 우리의 연봉은 연 48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규와 단체협약에 8시 출근 17시 퇴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포괄임금제)
이에 이번 임/단협을 통해서 연480시간(일 2시간) → 연 132시간(일 3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시 출근 - 17시 퇴근을 기준으로 17시 30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평일 특근 교통비는 폐지되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월부터 적용됩니다.

Q4) 52시간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4)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휴일•주말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하게 됩니다.
위 Q3에서의 답변대로 평일에도 시간외근로수당 신청을 위해 ezHR 시스템을 변경하여 정확한 시간외수당을 책정 할 것이며 올바른 근로환경 정착을 위해 노사가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Q5) 임금피크제 선택시 임금 삭감률 유예제도가 궁금합니다.

A5) 임금 삭감률 유예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만 직전연도(생일기준) 연 BEP 2배(지점) 또는 고과 Bo(본사) 이상인 직원은 급여 삭감 없이 직전연도(생일기준)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단 성과 미달 시 당해 연도 임금 삭감률을 적용합니다.

ex) 1964년 3월 1일 생의 경우 - 만 55세 도달 시

-2018.3.1.~2019.2.28.(만54세)의 연 BEP가 2배 이상 시 (본사 Bo 이상)
: 만 55세 때 급여삭감 없이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100% 지급(기존 80%)
-2019.3.1.~2020.2.28.(만55세)의 연 BEP가 2배 이상 시 (본사 Bo 이상)
: 만 56새 때 급여삭감 없이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100% 지급(기존 70%)
-2020.3.1.~2021.2.28.(만56세)의 연 BEP가 2배 미달 시 (본사 Bo 이상)
: 만 57세 때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60% 지급(기존 60%)
-2021.3.1.~2022.2.28.(만57세)의 연 BEP가 2배 이상 시 (본사 Bo 이상)
: 만 58세 때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100% 지급(기존 50%)

※ 임금 지급률 및 BEP 산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 연봉 기준으로 적용

Q6) 임금피크제에 이미 들어간 경우 명예퇴직 보상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2018.12.31.일 기준)

A6)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임금피크적용 연령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 적용률을 감안하여 명예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명예퇴직금 산정식 : 월봉24개월 × 임금피크적용률 + 월봉6개월

ex) 1962년 6월 1일 출생직원 : '18.12.31기준 만 56세 / 임금피크적용률 70%

① 명예퇴직시 : 월봉24개월 × 70%(임금피크적용률) + 월봉6개월

⇨ 월봉 16.8개월 + 6개월 = 22.8개월

② 주식상담역 전환 시 : 월봉18개월 × 70%(임금피크적용률) + 학자금(5년) or 3,000만원

⇨ 월봉 14.4개월 + 학자금*(최대 5년) or 3,000만원

* 학자금의 경우 상기 기간 동안 지원되며, 다만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는 지원이 종료됨

나이(만)	임금피크 적용률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55세 ('62.12~'63.11)	80%	월봉25.2개월	14.4개월 + 학자금(5년) 혹은 3,000만원
56세 ('61.12~'62.11)	70%	월봉22.8개월	12.6개월 + 학자금(5년) 혹은 3,000만원
57세 ('60.12~'61.11)	60%	월봉20.4개월	10.8개월 + 학자금(5년) 혹은 3,000만원
58세 ('59.12~'60.11)	50%	월봉18개월	9개월 + 학자금(5년) 혹은 3,000만원
59세 ('58.12~'59.11)	40%	월봉15.6개월	7.2개월 + 학자금(5년) 혹은 3,000만원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임금 삭감률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급여 삭감 없이 100%가 유지 됩니다.